

지방자치론 총평

이번 2014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은 기존 기출문제가 90% 기출변형문제가 10% 가량 출제된 평이한 시험이었습니다. 기출변형문제의 경우에도 신유형 또는 새로운 쟁점이라기보다 기존의 질문과는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하여 변화를 주었을 뿐, 제시한 보기에 있어서는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답을 찾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업시간에 이미 「지방자치법」에서 많은 부분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모든 문제가 지방자치론의 주요 쟁점으로 강조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기준인건비제도와 같이 최근의 제도변화의 출제가능성은 수차례 언급 드린 만큼 어려움 없이 해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론이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쉽게 출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등 기타 관련 법령 문제를 감안할 때 행정학의 지방자치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과목 수준에서는 평이한 시험이었고, 여기에 지방자치론이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추가로 생각해 볼 때 지방자치론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합격에 있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여 집니다.

여러분! 이제 **2014년** 공무원 시험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해 합격하여 노량진을 떠나 공직의 길을 걷게 되는 수험생에게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올 한해 결실을 맺지 못한 수험생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한 드림.

출제유형분석

	이론	법령	계		이론	법령	계
지방자치의 기초적 이해	1	—	1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	—	1	1
지방자치의 기본적 체계	2	6	8	지방자치의 재정	1	1	2
지방자치의 운영	3	1	4	정부 간 관계	2	2	4

01 지방의회 의원으로 옮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의사결정기관	ㄴ. 입법기관
ㄷ. 비판·감시기관	ㄹ. 헌법기관

- ① ㄱ, ㄴ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해설 ㄱ [O]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운영사항에 관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의사결정기관이다.

↳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근간인 조례의 제정권을 갖는 입법기관이다.

ㄷ [○] 지방의회는 의회의 결정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감독·확인하는 행정 비판·감시기관이다.

ㄹ [○]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관이다.

헌법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참고 2015 compass 지방자치론 p.82

▶ ④

0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방식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시·도의 자치사무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의 감사
- ② 확정된 예산에 대한 시·도지사의 안전행정부장관예의 보고
- ③ 시·도가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
- ④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시·도지사의 직무해태 시 주무부처장관의 직무 이행명령

해설 ①, ③, ④ [○] 행정적 통제에 해당한다.

② [×] 재정적 통제에 해당한다.

참고 2015 compass 지방자치론 p.180

▶ ②

03 제3섹터 방식의 지방공기업 설립배경이 아닌 것은?

- ① 공공부문의 자금부족
- ② 민관협력부문의 확대
- ③ 공공영역의 기업화 경향
- ④ 공공성의 강화

해설 ④ [×] 지방공기업은 기업의 경제성(영리성)과 공공복리(공공성)를 동시에 조화시켜 보자는 목적에서 설립된다. 즉, 지방공기업을 통해 공공성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성을 추구하면서 공익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 2015 compass 지방자치론 p.99

▶ ④

04 「지방자치법」상의 기구 중 참여당사자를 기준으로 볼 때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② 행정협의회
③ 지방자치단체조합 ④ 시·도지사협의회

해설 ① [X] 나머지 보기의 경우에는 참여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만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당사자이다.

지방자치법 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동법 제152조 제1항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동법 제159조 제1항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④ 동법 제165조 제1항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참고 2015 compass 지방자치론 p.193, 200, 201

▶ ①

05 대도시 자치구 폐지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도시 정부도 다른 지역과 같이 2계층이 되어야 한다.”는 형평의 논리에서 출발했다.
- ② 인위적인 구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수 없다.
- ③ 많은 국가에서 대도시 지방정부는 그 일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위 지방정부를 두지 않고 있다.
- ④ 광역행정을 실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일상적 행정수요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해설 ▶ 대도시 자치구 폐지론은 자치구를 폐지하여 계층수를 낮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므로 일반적인 단층제와 중층제의 논의와 일맥상통한다.

④ [×] 광역행정을 실현하기 좋은 것은 중층제이다. 즉, 중층제는 기초지방정부인 자치구가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사무를 담당·처리하고, 상급지방정부가 광역사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공공기능의 분업적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참고 2015 compass 지방자치론 p.40~44

▶ ④

06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의 관여가 이루어진다.
- ② 지방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를 동시에 가지는 사무이다.
- ③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
- ④ 예방적 감독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해설 ▶ ① [○] 단체위임사무는 위임된 사무이지만 해당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해당 자치의회가 그 사무의 처리에 참여하며, 조례제정권을 가진다.

② [○]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적 이해관계와 전국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③ [×]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

지방재정법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④ [○] 단체위임사무에서 국가의 감독은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사후 교정적 감독에 한하고 예방적 감독은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 2015 compass 지방자치론 p.63

▶ ③

07 주민참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소송제도의 제도적 보완장치이다.
- ② 우리나라의 주민발안제도는 직접발안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 ③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
- ④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관리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해설 ① [×] 주민소송제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제도적 보완장치이다. 즉, 주민이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고도 그 감사결과에 불만족하는 경우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가 주민소송제도이다.

② [×] 직접발안은 주민의 발안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직접 주민이 발안하는 제도이고, 간접발안은 주민의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주민발안제도인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직접발안의 형식이 아닌 간접발안의 형식이다.

③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가 불가능하다.

④ [×] 주민투표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주민투표법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① 주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구·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참고 2015 compass 지방자치론 p.124, 125, 128

▶ ③

08 「지방자치법」 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해설 ①, ② [○]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③ [○] 동법 제24조

동법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동법 제26조 제9항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⑨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2015 compass 지방자치론 p.58

▶ ④

09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공서비스는 비경쟁성을 특징으로 한다.
- ② 공공서비스는 많은 경우 배제성을 지니지 않는다.
- ③ 무임승차는 비배제성보다는 비경쟁성과 관련이 있다.
- ④ 순수한 공공서비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해설 ①, ② [○]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공서비스(공공재)는 비배제성, 비경합성(비경쟁성)을 특징으로 가진다.

③ [×] 무임승차란 공공성이 요구되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는 현상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의 재화 이용을 금지시키지 못하는 비배제성의 특성과 더욱 관련이 깊다.

④ [○] 중앙정부의 경우 순수공공재(국방, 치안 등)를 주로 공급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정도가 약한 준공공재(상하수도, 교육, 도로 등)를 주로 공급한다.

참고 2015 compass 지방자치론 p.96, 135

▶ ③

1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지와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와 설치의 법률로 정한다.
- ④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설 ①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③ [○] 동법 제4조 제1항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동법 제4조의 2 제2항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2015 compass 지방자치론 p.54, 55

▶ ①

1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비중
- ②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
- ③ 전체공무원 대비 지방공무원 비율
- ④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율

해설 ①, ③, ④ [○] 모두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에 해당한다.

②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가 아닌 그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국세의 상대적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중앙집권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

참고 2015 compass 지방자치론 p.14

▶ ②

12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에 대한 집행기관의 통제수단이 아닌 것은?

- ① 재의요구권
- ② 서류제출요구권
- ③ 제소권
- ④ 선결처분권

해설 ①, ③, ④ [○]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의 관계에 있어 의결기관에 대한 집행기관의 통제수단으로는 의결에 대한 견제(재의요구권), 재의결에 대한 견제(제소권), 선결처분권 등이 있다(지방자치법 제107조 내지 109조).

② [×]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의회가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다(동법 제40조).

참고 2015 compass 지방자치론 p.92

▶ ②

13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기준에 의한 시·도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② 시·도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한 사무
- ③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 ④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해설 ①, ③, ④ [○] 지방자치법 제10조

- ② [×] 시·도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한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이다.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가 시·도의 사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도

-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참고 2015 compass 지방자치론 p.69

▶ ②

14 협력적 정부 간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원인이 아닌 것은?

- ① 비선호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 간 부정적 외부효과가 증가하고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 간 하위목표와 정책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③ 신중양집권화 경향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 되고 있다.
- ④ 광역적 처리를 필요로 하는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해설 협력적 정부 간 관계 즉, 광역행정의 중요성 및 지방정부 간 갈등관계의 해소에 대한 질문이다.

- ① [○] 지역 간 부정적 외부효과(쓰레기 소각장 설치로 인한 문제점)가 발생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협력하여 대처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 ② [○] 각 지방자치단체의 목표가 상이할 경우 상호 협력을 통해 양자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된다.
- ③ [×] 신중양집권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인정하는 국가와 지방의 협동적 분업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협력관계가 중시되고 있는 것은 중앙집권의 문제점으로 인한 신지방분권화의 경향에 의한 것이다.
- ④ [○] 교통과 환경과 같은 광역행정수요의 지속적 발생으로 지방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참고 2015 compass 지방자치론 p.18, 195

▶ ③

15 세외수입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세외수입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② 세외수입은 응익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③ 세외수입은 종류가 많고 그 수입근거와 형태도 다양하다.
- ④ 세외수입은 지역별, 연도별로 차이가 크다.

- 해설** ① [×] 세외수입은 일반재원으로 분류되는 것도 있지만, 재원의 용도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
 ②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이나 서비스에 대한 반대보상적인 성격의 수입이므로 응익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③ [○] 세외수입은 수입의 근거와 종류 및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현금적 수입 이외에 수수료 등 수입증지의 형태로 징수하는 경우가 많다.
 ④ [○] 세외수입은 지방 간 불균형성과 회계연도 간 불규칙성이 강하다.

참고 2015 compass 지방자치론 p.150

▶ ①

1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이다.
- ③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설** ① [○] 지방자치법 제8조 제3항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② [○] 동법 제2조 제1항 각호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 ③ [×]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동법 제2조 제2항).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 ④ [○] 동법 제2조 제4항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2015 compass 지방자치론 p.45, 51

▶ ③

17 지방공공재 공급에 대한 티보(Tiebout)의 가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주민들은 이주할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할 때 규모의 경제효과를 고려한다.
- ②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 ③ 상이한 가격(조세)으로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
- ④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해설 ① [×] 티보가설에서는 주민들이 이주 시 규모의 경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공공재 생산을 위한 단위당 평균비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방정부의 규모의 차이에 따른 지방공공재 대량생산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③, ④ [○] 티보가설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거주할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이사비용은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주민이 선택할 수많은 지자체가 존재한다고 본다.

참고 2015 compass 지방자치론 p.176 (*행정학 기본서 p.132)

▶ ①

1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가 존재한다.
- ③ 기준인건비제는 기존의 총액인건비제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①, ②, ③ [○]

④ [×] 기준인건비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매년 산정하여 자율범위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이하 "자율범위"라 한다)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과 자율범위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참고 2015 compass 지방자치론 p.60

▶ ④

19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부담은 부담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단체위임사무의 국가 감독은 기관위임사무에 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 ③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 감독은 합법성 위주의 감독이다.
- ④ 단체위임사무에 따른 배상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이다.

해설 ① [×]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경비부담은 위임기관의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보조하는 경비는 교부금의 성격을 갖는다.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은 단체위임사무에서이다.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③, ④ [○]

참고 2015 compass 지방자치론 p.63, 64

▶ ①

20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재정 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연대책임을 진다.
- ④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① [○]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

② [×] 지방채의 발행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다. 다만, 14, 11, 29 시행예정인 개정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

③ [○] 동법 제11조 제5항

④ [○] 동법 제12조 제1항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2015 compass 지방자치론 p.162

▶ ②